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에 관하여 (2024년 11월 1일 시행)

자전거의 위험운전에 관해 벌칙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하여

휴대전화 등을 손에 쥐고 자전거를 타면서 통화하는 행위,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되어 벌칙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반자 (휴대전화 등을 손에 쥐고 통화나 표시된 화면을 주시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전거의 '~하면서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의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자전거의 음주운전 외에 주류의 제공이나 동승·자전거의 제공에 대해 벌칙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위반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 제공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주류 제공자 또는 동승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전거 운전자 강습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